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3 호

붙임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염전”이라 함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염전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를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한지역”을 각각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을 삭제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8호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그 구역의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별표 1,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안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u>〈신 설〉</u></p>	<p>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염전”이라 함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염전을 말한다.</p>
<p>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미만은 제외한다.</p> <p>1. (생 략)</p> <p>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p> <p>3. ~ 4. (생 략)</p> <p>5.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p>	<p>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 -----제한구역(---“제한구역”----- -----, 제한구역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7조-----</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제3조제2항----- 및 (삭 제) ----- -----</p>

6. ~ 7. (생 략)

8.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9. ~ 10.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6. ~ 7. (현행과 같음)

8. -----제12조-----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별표 2】

###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 염전으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4 호

붙임 :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공영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림택시”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드림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 중 드림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드림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드림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드림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드림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드림택시 운행방법)** ① 드림택시 탑승 대상은 공영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드림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 한다.

- ③ 드림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드림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④ 드림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드림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드림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드림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드림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드림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드림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제6조(드림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드림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목적 외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드림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지원을 중단

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드림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드림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드림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드림택시 운행 대상 마을

읍·면	행정리	마을명	읍면소재지까지의 거리(Km)		
지도읍	봉리4리	취동	9		
	봉리4리	소금출	8		
	당촌리	진섬	10.8		
	광정4리	용교	1.9		
압해읍	신용1리	추섬	6.5		
	복룡2리	상도	7.6		
	가룡1리	무학	5.7		
	가룡2리	황두	7.1		
	대천1리	가오지	4.4		
	분매3리	상장천	5.1		
	분매3리	하장천	5.1		
	신장2리	태도	6.9		
	장감리	구도선장	8.3		
	장감리	정동	7.7		
증도면	분매2리	거룡	5.2		
	증북리	구분포	5		
임자면	대초2리	화도	8		
	이흑암리	은동	7		
	삼두리	현기미	9.6		
자은면	삼두리	필길리	9.5		
	면전리	구래	4.4		
비금면	고장리	사월포	5.6		
	당두리	큰당머리	9.7		
도초면	만년리	만년	3		
	수다리	수다	4		
	수다리	명당	6		
	라포리	매실	5		
	난말리	난말	5		
	월포리	월포	2.5		
	외하리	정두	2.5		

읍·면	행정리	마을명	읍면소재지까지의 거리(Km)		
하의면	어은1리	세꾸미	4		
	후광2리	역꾸미	4.5		
	후광2리	개도	5		
	후광3리	문병도	5		
	오림4리	벗원	3.5		
신의면	상서3리	기도	8.3		
	상서5리	염분동	7.5		
	고평사도리	평사도	5.2		
	고평사도리	고사도	5.2		
장산면	오음1리	한새골	4		
	오음2리	동구섬	3		
	오음2리	광포	3		
	오음2리	대머리	4		
	대리2리	삼배	3		
	팽진1리	호파	7		
	다수2리	막금도	3.6		
안좌면	금산리	제섬	3		
	복호리	양골	9		
	존포리	부소도	10		
	여흘리	포수개	7		
	남강리	마등	3		
	대척리	소척	3		
	창마리	원두	3		
	우목리	내우목	9		
	사치리	사치	7.5		
팔금면	거문리	매도	8		
	진고리	둔봉	7		
	읍리	뛰섬	4		
암태면	중홍리	원안	5.5		

[별지 서식 제1호]

##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요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운행내역	운행마을	읍·면	리	마을		
	운행기간	년	월	일	월	일(1개월간)
	운행횟수					
신청내역	신청액	원 (₩ )				
	지급계좌	(은행명: )				

『신안군 드림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운행요금 지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신안군 드림택시 월별 운행 대장 1부. 2. 드림택시 (지급용)이용권 및 기타 운행증빙자료.	

[별지 서식 제2호]

## 신안군 드림택시 월별 운행 대장

사업자명 :

차량번호 :

[ 월 ]

번호	날짜	마을명	탑승 인원(명)	요금(A) (원)	이용자 지불액(B) (원)	청구액 (C=A-B) (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5 호

붙임 :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랑스러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신안군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신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5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로 달리 추진되는 신안군 대표 축제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② 옥외행사의 경우 읍·면 순회 실시하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라 달라 할 수 있다.

**제4조(행사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행사추진위원회, 군, 읍·면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주민대표 등
2. 지원범위

- 가.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 나. 읍·면 단위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비용
- 다. 행사 참석자에 대한 선박과 차량 및 군 소유 시설물(경로당, 복지센터 등) 제공

**제5조(위임규정)** 본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6 호

붙임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나 실무경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화관광 및 투자 분과위원회, 농·수산 및 지역개발분과 위원회, 보건·복지·환경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자료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조사 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7 호

붙임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첫째 아이는 150만원, 둘째 아이는 250만원, 셋째 아이는 3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4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급기준) ----- 첫째 아이는 150만원, 둘째 아이는 250만원, 셋째 아이는 3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45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절차) ①·②(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 ----- 서식)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 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출산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이름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자치단체별로 정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 신청서 압류방지 통장제외)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금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구리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input type="checkbox"/> 출생사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	--

##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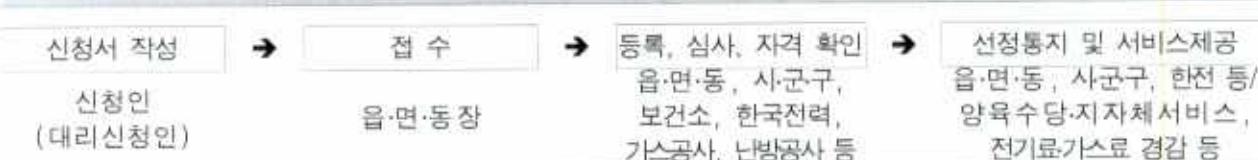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처리 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신자/출산자(산모)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부서장 또는 팀장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신/출산 자와 관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 공포문

제25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05. 30)에서 의결된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조례 제 1928 호

붙임 :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u>26조제2항</u>에 따른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 <u>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u>제26조제1항</u>에 따라 수납된 과태료는 신안군 수입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34조제2항</u>-----  -----  -----.</p> <p>제2조(부과대상자) -----  -- <u>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  -----.</p> <p>제8조(과태료의 귀속) --- <u>제34조제1항</u>-  -----  -----.</p>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원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8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발 신 : 신안군수(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③생년월일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신 안 군 수

# 공포문

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14일

신안군수



신안군 규칙 제1038호

붙임 : 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신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3항중 “청원서는”을 “청원서에”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청원서에”로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1항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2항중 “당해 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으로 한다.

**제16조(징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u>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지방자치법 시행령」제<u>60조에 따라</u> .....</p>
<p><b>제2조(청원서의 제출)</b> ①~② (생략) ③ 청원서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u>별지 제1호서식에</u>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p>	<p><b>제2조(청원서의 제출)</b>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원서에 .....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청원서에</u> .....</p>
<p><b>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b>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b>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b>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4. (현행과 같음)</p>
<p><b>제5조(이의신청)</b> 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5조(이의신청)</b> ① ..... 제4조 제3호에 따라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 ..... 제6조 제3항에 따른 ..... ..... .....</p>

현 행	개 정
<b>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b>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u>당해 의원의</u>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생략)	<b>제9조(목적) ① (현행과 같음)</b> ② ..... ..... <u>당 의원</u> ..... ..... ..... ③ ..... <u>해당 의원</u> 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b>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b> 위원회는 청원이 <u>다음 각호의 1</u> 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 3. (생략)	<b>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b>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b>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b> 의장은 <u>다음 각 호의</u>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 5. (생략)	<b>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b> ..... <u>다음</u> ..... ..... 1. ~ 5. (현행과 같음)
<b>제16조(징계)</b>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u>제9조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 <u>신안군의회 회의규칙</u>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b>제16조(징계)</b> ..... <u>제9조에 따른</u> ..... ..... ..... <u>「지방자치법」 및 「신안군의회 회의규칙」</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